

## “수신 안 되는데 UHD TV?” 공정거래위원회, TCL·샤오미 광고에 ‘기만적 행위’ 판정

### UHD KOREA,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및 지상파 UHD 보편적 서비스 가치 제고 계기 마련

사단법인 UHD KOREA(사무총장 임중곤)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TCL, 샤오미 제품이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고 ‘UHD TV’라며 광고·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기만적인 광고’라는 최종 판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공정위, “수신 불가 사실 숨긴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명시]

공정위는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3월 24일, 심사관 전결 경고를 통해 티씨엘일렉트로닉스 코리아(유)와 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유한책임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공지했다. 공정위는 결정서에서 피조사인들이 판매 중인 UHD TV 제품으로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UHD TV’, ‘4K TV’ 등으로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 [UHD KOREA의 제보와 추가 의견 제출이 만든 성과]

UHD KOREA는 지난 2025년 5월, 일부 외산 TV 브랜드들이 국내 방송 규격인 ATSC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에 티씨엘일렉트로닉스코리아(유)와 샤오미테크놀로지코리아유한책임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UHD KOREA는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표시·광고에 국내 방송 규격 ATSC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으로 지상파 UHD 방송시청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보편적 시청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UHD KOREA 임중곤 사무총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지상파 UHD 방송이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서비스임을 재확인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누락한 판매자의 기만적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UHD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제품을 ‘UHD TV’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소비자 권리 침해임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처분을 계기로 정부와 유통업계가 협력하여 소비자가 TV 구매 시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UHD KOREA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